

# 국내 자연재해보험 운영 현황 및 추진방안



이 희 춘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장  
hclee6053@hanmail.net

## 1. 개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형태 및 규모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첫째, 대륙성 기후와 열대해양성 기후의 기상적인 요인, 둘째,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동고서저(東高西低)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적인 요인, 셋째, 도시화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연평균 131명이며, 연평균 1조 7,7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매년 평균 2조8천억원 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등의 국고가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sup>1)</sup>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해정책은 대부분 정부와 지

자체의 재해관련 기금 등에 의한 국가의 방재활동에 의한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두고 왔으며 방재교육, 자연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등 비구조적 대책에 의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에 있었다. 특히, 자연재해의 거대성으로 인해 민영보험사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런 이유로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민간보험시장 베이스에서 위험분산이 어려워 각 직능 단체별로 가족공제, 어선공제 등 공제의 형태로 운용되어 오다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농림부), 2004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해양수산부), 2006년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 모든 보험들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sup>2)</sup>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는 이들 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운용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거나 국가재보험의 운용을 통해 보험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보험 중 재물위험만을 담보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추진방안에

1)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국회예산정책처, '06.9)에서 인용하였음.

2) 정책성보험은 정부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으로서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고 동시에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국가재보험의 설치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4종에 이르고 있다('06.8.8일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국내 자연재해보험 운영 현황

### 2.1 국내 자연재해보험의 특징

선진국에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의 경우 국가재해관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적인 보험료 보조는 없고 민간보험시장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과 위험분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는 재보험만을 담보함으로써 보험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보조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재해의 대상 및 보상영역을 포괄적으로 설계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민간보험시장에서 대부분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 가입시 재해특약을 의무화하여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보험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와 병행하고 있어 자발적인 가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책보험의 특성상 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인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역선택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2 자연재해보험 종류별 운영 현황

### 2.2.1 풍수해보험

#### ① 개요

풍수해보험은 현재 17개 시·군('06년 10월 2일, 8개 지역 추가 포함)<sup>3)</sup>에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08년 1월부터는 전국 232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실시 단계에서 가입률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은 시범사업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한다”는 잘못된 국민의식의 팽배로 풍수해보험도입 초기에는 보험가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총 30회)와 동부화재보험(주) 모집조직의 체계적인 활동결과,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홍보 부족을 거울삼아 소방방재청 차원의 언론홍보(TV홍보 총 10회, 신문보도 총 10회 등)와 풍수해보험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를 12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고 계속계약자에게 일정율의 할인율(5% 할인)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표 1.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별 가입현황('06년 11월 10일 현재)

구 분	주 택	비닐하우스	축 사
가입건수	5,056	48	56
가 입 율	3.44%	0.49%	1.35%

3) 강원도 화천군, 평창군, 경기도 이천시, 평택시, 충청도 영동군, 단양군, 충남도 부여군, 당진군, 전북도, 완주군, 임실군, 전남도 곡성군, 여수시, 경북도 예천군, 봉화군, 경남도 창원군, 남해군, 제주도 서귀포시

② 풍수해보험 주요 내용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주택, 온실, 축사)에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직접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③ 풍수해보험 운영 실적

금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9개 지역<sup>4)</sup>에 대한 시범지역별·시설물별 가입건수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피해유형별 보험가입금액

대 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비율별 지급보험금		
		피 해	50%	70%	90%
주택	전파 (全破)	재건축불가피	3천만원×50% =1,500만원	3천만원×70% =2,100만원	3천만원×90% =2,700만원
	반파 (半破)	대수선불가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小破)	기둥, 보 등 수선 불가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축 개축	반파 침수	반파, 침수 주택이라도 이축, 개축을 희망할 경우		
		1,080만원	1,260만원	1,440만원	
온실 축사	전파 (全破)	70%이상	기준단가 <sup>주1)</sup> ×5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sup>주1)</sup> ×7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sup>주1)</sup> ×90% ×총피해면적
	반파 (半破)	35%~70%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小破)	20%~35%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주 1) 온실의 기준단가는 온실유형(철골유리, 철재파이프 등)에 따라 1제곱미터(㎡)당 2,280원(축재하우스)~104,156원(철골유리온실)  
 주 2) 축사의 기준단가는 축종유형(소, 돼지, 닭 등)에 따라 1제곱미터(㎡)당 39,000원(간이돈사)~195,000원(번식돈사)

표 3. 지역별·시설물별 가입건수('06년 11월 10일 현재) (단위 : 건)

소재지	주 택	온 실	축 사
경기 이천	1,538	-	16
강원 화천	384	-	4
충북 영동	282	4	-
충남 부여	281	3	-
경북 예천	559	-	34
전북 완주	235	18	-
경남 창녕	640	5	-
전남 곡성	657	-	2
서귀포480	18	-	-
합 계	5,056	48	56

주) "-"는 해당 시설물 판매지역이 아님

4) 10월 2일부터 8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추가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9개 지역에 대해서만 작성

### 2.2.2 농작물재해보험

#### ① 개요

자연재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거한 기존의 지원방식은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에 한정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01년 3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재생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06년 현재 7개 농작물(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뽕<sup>5)</sup>)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부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납입보험료의 71%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농림부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원수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민영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06년 현재 농협이 전체 인수물건의 25%만 보유하고, 나머지 75%는 민영손해보험회사가 수재하고 있다. 전체 75% 중 삼성화재 21%, 현대해상·동부화재·코리안리가 각각 17%, LIG손보사가 3%

를 보유하고 있다.

#### ② 농작물재해보험 주요내용

1970년 후반부터 도입이 검토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정사상 처음으로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감귤 등 4개 작목이, 2006년에는 뽕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상재해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풍, 우박, 동상해 등이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 ③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실적

2003년 태풍 “매미”로 순손해율이 291%에 이르렀으나, 반면에 농작물재해보에 대한 대상작목의 확대요구가 커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2년 연속('02년, '03년) 커다란 태풍피해로 인해 보험금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농업인들에게 확산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

표 4. 농작물재해보험의 연도별 상품의 주요내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 상 농작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좌 등)	(좌 등)	뽕은 감 추가
대 상 지 역	사과, 배 : 전국 기타 : 시범지역	전 국	(좌 등)	뽕은 감 : 시범지역 기타 : 전국
대 상 재 해	사과, 배 : 태풍, 우박, 동 상해, 집중호우 기타 : 태풍, 우박, 동상해	(좌 등)	(좌 등)	(좌 등)
가 입 자 격	보험가입 대상 농작물을 면적 1500m <sup>2</sup> (약 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재배하는 자			
가 입 금 액	가입수확량(표준수확량을 참조하여 농가가 결정)에 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전에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예고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가입 대상 농작물이 대상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된 경우 그 수확 감소량을 보상			
보험금	보험가입 대상농작물의 수확 감소량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 단,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30% 중 선택)은 제외			

5) 뽕은 감은 주산지 5개 시군지역(영암, 광양, 하동, 청도, 상주)을 대상으로 '06년부터 시범사업 실시(전국대상의 본 사업은 '08년)

표 5. 농작물재해보험의 연도별 주요 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입율 <sup>주1)</sup>	15.2%	18.2%	23.4%	25.0%(추정)
계약건수	18,538건	28,504건	31,813건	34,714건
보험료	27,640	42,509	72,549	81,675
지급 보험금	50,018	13,599	23,871	10,290
손해율(순손해율)	181%(291%)	32%(42%)	33%(44%)	13% <sup>주2)</sup> (17%)
대형손실	태풍 "매미"	-	-	-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55% : 45%	100% : 0% (실비정산)	76% : 24%	77% : 23%
정부 지원	보험료 63.5%	보험료 62%	보험료 68%	보험료 71%
	순보험료 50%	순보험료 50%	순보험료 61%	순보험료 58%
	사업자운영비 80%	사업자운영비 실비정산	사업자운영비 100%	사업자운영비 100%
재보험 구조 <sup>주3)</sup>	농협보유 100% 손보사 불참	농협보유 100% 손보사 불참	농협보유 25% 손보사 참여 75%	농협보유 25% 손보사 참여 75%
국가재보험	없음	없음	손해율 180% 초과분 국가담보	손해율 180% 초과분 국가 담보

주 1) 가입율 = 보험가입면적 ÷ 가입대상지역 전체 경작면적

주 2) '06년 1~7월까지의 실적이며, 태풍 등 추가 재해 발생에 따라 증가 예상

주 3) 손해보험회사도 원수 보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재보험사 자격으로 참여

험에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까지의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위의 표 5와 같다.

### 2.2.3 어선재해보험

#### ① 개요

어선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영되는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이다. 어업인의 귀중한 생산수단인 어선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어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다. 또한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표 6. 톤수별 국고보조율 현황

구분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총보험료기준	62%	54%	14%
위험보험료기준	60%	50%	0%

보험계약은 기본계약에 피격/포획/나포/역류 부담특약, 어구특약, 어획물보상특약, 실손보상특약,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배상특약 등을 부대계약으로 해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어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어선은 어선법에 의해 등록된 연근해 어선이다. 보험의 목적은 선체,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으로 기관 및 의장품은 선체에 고정부착된 것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이동식 선외기 등은 가입이 제외된다. 반면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어선은 만기선령(목선 15년, 강선 등 25년) 초과어선(단, 감정평가 등에 의한 가용연수 범위 내에서는 보험가입가능), 감항능력 결여선박, 장기계류, 감선대상 등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등이다. 어선톤수별 국고보조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② 어선재해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

표 7. 어선재해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

구 분		어선재해보험
보험대상물		연근해어선 ※ 선체, 기관, 의장품
대상 재해	주계약(필수가입)	· 해상고유의 위험(침몰, 좌초 등) · 사고로 인한 손해(화재, 손상 등)
	특약(선택가입)	어구, 어획물 보상특약 등
가입방식		임의가입
보상수준 유형		· 기본계약 : 어선평가액의 80~100% · 그 밖의 특약: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0~30/100
국고 지원	순보험료	총톤수 20톤 미만 : 50%(20톤 이상: 없음)
	운영사업비	50%
	국고지원율(총계)	총톤수에 따라 10~50%
보험가입률(%)		5.4%
보험운영 기관		수협중앙회(위탁관리)

③ 어선재해보험의 연도별 운영실적

표 8. 어선재해보험의 연도별 주요 실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9월 기준)
가입율 <sup>주1)</sup>		5.4%	5.7%	5.9%
계약건수(척)		4,720	4,925	10,284
보험료(백만원)		18,596	25,440	19,934
지급보험금(백만원)		8,636	30,525	17,381
손해율(순손해율)		46.4%(58.1%)	120.0%(150.0%)	87.2%(109.0%)
예정손해율 : 예정사업비율		80 : 20	좌 등	좌 등
정부 지원	국고지원율	총톤수 20톤 미만 : 50% 총톤수 20톤 이상 : 10%	총톤수 20톤 미만 : 52% 총톤수 20톤 이상 : 12%	총톤수 10톤 미만 : 62% 총톤수 20톤 미만 : 54% 총톤수 20톤 이상 : 14%
	순보험료	총톤수 20톤 미만 : 50% 총톤수 20톤 이상 : 없음	어선톤수 상관없이 50%	어선톤수 상관없이 70%
	운영사업비	어선톤수 상관없이 50%	어선톤수 상관없이 60%	총톤수 10톤 미만 : 60% 총톤수 20톤 미만 : 50% 총톤수 20톤 이상 : 없음
재보험구조		수협(위탁운영)	좌 등	좌 등
국가재보험		없 음	없 음	없 음

주 1) 가입율 = 어선가입척수 / 어선대상척수

3. 국내 자연재해보험 추진방안

3.1 가입률 제고방안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

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의 대부분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련 보험은 역선택의 문제, 모럴해저드 문제가 상존하고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현행 무상복구

비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입률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지는 몰라도 자연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의무가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다면 자발적 가입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의무가입을 통해 보험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적 의무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 지자체 담당공무원(이장, 동장 포함)과 지역주민, 작목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계속 개최, 지자체의 가을행사(예,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물 배부, 과거 5년간 무상복구비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 8,650명에게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담긴 청장명의 서신 발송, 가입률 우수지역(경기 이천시)에 대한 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 PA에 대한 시상금 대폭 확대 시행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의 단계별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서만이 풍수해보험이 자율적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이 정책보험이라는 점을 고려, 계리적인 공평성(actuarial equity) 보다는 사회적 공평성(social equity) 측면에서 '08년 본 사업 전환시 지역별 보험료 조정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2 추진방안

#### 3.2.1 시설별 운영 주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 관련 보험은 해당 부처에서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보험의 특성상 역선택의 문제, 무상지원제도의 존속, 가입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물에 대한 관련부처로의 이관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무상복구비 지원제도가 존속하는 한 무의미한 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의는 위험분산의 가능성 및 효율성측면(보험제도측면), 편익성과 형평성 측면(수요자 측면), 행정의 일관성 및 통합성 측면(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 관련 보험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가입률이 일정한 과도(예, 가입율 70%)에 오를 때 까지 현재와 같은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어선보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이 활성화가 된 후에 3개 법안을 통합하여 가칭 자연재해보험법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자연재해 관련 정보의 공유(예를 들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풍수해관련 DB 공유)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실효성이 있는 정책수행이 가능하다. 둘째, 자연재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같이 국가재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에서 수행을 하되 해당 부처와는 자연재해보험법안의 개정 등을 통해 참여토록 한다. 셋째, 현행 무상복구 지원제도하에서는 사유시설물에 대한 무상복구제도가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상복구비가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상복구비하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1차)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그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2차)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행 자동차배상책임보험(1차)와 종합보험(2차)의 관계, 산재보험(1차)과 산재초과담보(2차)와 유사하다.

#### 3.2.2 정부와 민간시장의 상호 보완

민간시장의 담보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도의

표 9. 국가와 민영보험회사의 역할분담

국 가	민영보험회사
법률 및 제도보완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위험인수/위험분산)
국가의 재보험자 역할	손해사정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보험사업자의 사업성 보전	위험분산기법의 다양화
위험도 개선(보험가능 위험화)	다양한 상품개발 및 상품성 제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되, 정부는 민영부문의 사업성을 일정기간 보전해 주고 보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영보험시장은 위 표 9와 같은 역할분담 체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sup>6)</sup>

3.2.3 도덕적 위험 및 역선택 문제 해소

정책성보험에 상존하고 있는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도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계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덕적 위험 경감제도에 대한 효과 검증, 도덕적 위험 발생시 보험조건 또는 인수조건을 제한하거나 축소한다. 둘째,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낮은 위험을 보험제도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 필요, 보험가입촉진지원제도의 병행, 위험구분에 의한 요율차등화 유지필요 등이 요구된다.

3.2.4 손해사정의 합리적 개선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성실 손해평가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자격제도의 도입, 주기적인 보수교육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인력양성, 손해사정 인력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3.2.5 보험제도화에 필요한 통계집적 및 관리

현재는 수작업에 의한 재해통계자료의 집계로 신속성과 다양성이 떨어지나 앞으로 재해관련통계자료 집적의 DB화, 일원화(소방방재청 수행)를 통해 재해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적·공유하고 보험통계의 집적 및 관리를 통한 보험요율의 산출, 위험분석, 통계의 객관성 확보, 효율적인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까지의 자연재해 관련 보험운용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실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액을 보험제도로 전환시킨다면 향후 자연재해 관련 보험은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도 과거와 같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한다는 사후 복구체계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예방대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사의 과학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민영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재해보험시장은 커질 수 있다. 물론 자연재해의 특성상 대형 손실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민영보험사의 손실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손실보전준비금제도의 운용 등을 통해 민영보험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과학적인 민영보험사와 위험관리

6) 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 방안(보험 개발원 주관 FY'06정책보험 Workshop 자료, '0.11.13)



시스템과 정부의 방재시스템이 연결될 때 국가방재시스템은 순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민간보험사 또는 농·수협에 위탁 형태로 자연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연재해보험 관련 전담기관의 설립·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EMA에서 운영하는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가 그것이다. 그렇다고 전담기관에서 위험을 보유(risk taking)하는 것이 아니라 집적된 위험이 합리적으로 보험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풍수해보험법에 의하면 232개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초기단계

에서는 정부에서 일정부분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혼란을 배제하고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럴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담기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직접 현실에 맞게 구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현재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이 활성화가 되어 국내손해보험산업의 규모 확대는 물론 국가방재대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본 원고는 소방방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